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까지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함. 이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에서 중요한 서비스 업무는 사업자의 본질 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의 하나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그러나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영향으로 단기적인 운용성과(고금리 보장, 수수료 인하)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능력 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 확대,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 중심의 법률 개정이 근로자가 서비스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해 사업자 선정 요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은퇴설계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임의) 서비스를 적극 개발함과 더불어, 다른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선정은 전문성, 서비스 능력보다 근로자에게 단기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및 수수료 수준 등 단기적인 운용성과에 의해 좌우됨.

● 사업자는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위해 근로자 등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거나 일부 수수료를 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함.

– 이에 서비스 업무는 사업자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됨.

〈표 1〉 퇴직연금의 법정 및 임의(부가) 서비스

법정 서비스		임의(부가) 서비스
운용관리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 적립금 운용정보 제공 • 연금제도 설계 • 가입자교육(위탁 시) • 사무(기록)관리 등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 수령 • 적립금 보관 및 관리 • 급여 지급 등	• 은퇴설계 서비스 • 투자자문 서비스 • 운용성과 제공 서비스 • 재계산, 계리 서비스 등

■ 그러나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 확대,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고금리 보장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하 ‘근퇴법 및 시행령’이라 함) 개정 영향으로 퇴직연금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임.

- 이는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직·간접적으로 근로자 등에게 영향을 주고 사업자 선정 고려 요인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이런 측면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폭 확대

- 근퇴법 개정 이전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A형 등 3가지 가입 형태였지만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DB형, DC형, DB형+DC형, 개인형 IRP, 회사형 IRP 등으로 가입 형태가 보다 확대됨.
 - 또한, 가입 대상도 근퇴법 개정 이전은 근로자로 한정되었지만 근퇴법 개정 이후에는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됨.

〈표 2〉 근퇴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대상

구분	근퇴법 개정 이전	근퇴법 개정 이후
가입형태	• 3가지 가입유형 – DB형, DC형, IRA형	• 5가지 가입유형 – DB형, DC형, DB형+DC형, 개인형 IRP, 회사형 IRP
가입범위	근로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전국민

- 이러한 퇴직연금 가입 형태 및 가입 대상 확대는 획일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보다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더욱 요구할 것임.
 - 즉, 가입 형태별 등을 고려한 퇴직연금 서비스의 차별화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퇴직연금 서비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명문화함.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기업의 책무로 규정함.

〈표 3〉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개정된 근퇴법	개정된 근퇴법 시행령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u>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u>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제32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u>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서비스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사용자는 <u>법 제13조와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3. 생략

- 즉, 사업자 선정 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능력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규정화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자 선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근퇴법 및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 선정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단기적인 운용성과인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에 의존하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짐.

■ 고금리제공 등 불공정 영업 규제

- 개정된 근퇴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담해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즉,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고금리 보장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불공정 영업에 의해 운용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표 4〉 특별이익(고금리보장 등) 금리 관련 규정

개정된 근퇴법	개정된 근퇴법 시행령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생략	제36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① 법 제33조 제4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밖에 제1호부터 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 이러한 규정은 단기운용성과를 지양하고,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다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가입자의 인식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 이처럼 근퇴법 및 시행령 개정은 근로자 인식에 변화를 주어 사업자 경쟁력 요인이 단기수익률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

- 즉, 개정된 근퇴법은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와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업자의 경쟁력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이는 2006년 미국 연금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 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업자 선정 시 서비스 능력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표 5〉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 요인 변화

구분	경쟁 1단계	경쟁 2단계	경쟁 3단계
경쟁 양상	수탁기관 간 경쟁	동류기관 간 경쟁	개별고객 경쟁
경쟁력 요인	단기 수익률 및 수수료		서비스 능력 등
시기	제도 도입 단계 (2005년~2012년)		제도 성숙 단계 (2012년~)

■ 이러한 퇴직연금 서비스 중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보험산업은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능력 배양과 더불어 은퇴설계 서비스, 투자 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 또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제도 유형별로 서비스를 보다 세분화 하여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결국 보험회사는 미래 퇴직연금시장 환경이 서비스 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감안 해, 근로자 속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비스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임. **kiri**